

세상을 푸르고 깨끗하게 미래와의 약속, Responsible Care

한국RC협의회는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인 RC를 추진하기 위해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료, 클로르알카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기타 화학관련 기관들이 함께 설립한 단체입니다.

환경



능동적·선제적 대응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



인류의 풍요와 윤택한 삶

Responsible Care

47

Issue No



CONTENTS



통 권: 제 47호
발행인: 심홍섭
발행처: 매경바이어스가이드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전 화: 02-3668-6173
E-mail: rcmaster@krcc.or.kr
홈페이지: http://www.krcc.or.kr

Responsible Care®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 산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04 Issue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기업 대응방안

18 Focus

2021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온라인 개최 결과

12 Special Report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용)

22 RC뉴스룸

사무국 주요활동

24 회원사 소식

주요회원사
동향 소식

29 캘린더

28 회원사 리스트

인류에게는 풍요로움을
후손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국RC협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Responsible Care
means international
voluntary activities
for the chemical industry

promot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and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people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기업 대응방안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오병선 |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1. 들어가며

요즘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의 화두와 관심사는 단연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반발과 불만도 많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중심의 처벌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2022.1.27.)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약칭하는 것이다.

본 법률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난 9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확정되었다.

지금 우리 기업(조직)에서 할 일은 이 법에 따른 준수 의무를 다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충실하게 이행할 준비를 마련하였는지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점검하고 만약 미흡한 것이 있다면 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다음사항을 자문(自問) 자답(自答)해보자. 미흡하다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우리 회사·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 대상이라면, 구체적 근거조항과 준수 의무 내용은 명확하게 파악되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의 주체(경영책임자 등)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였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위한 준비는 완료하였는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전담조직과 책임관리를 위한 책임과 권한(R&R)은 명확하게 정립하였는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의 법규파악은 완료하였으며 문서화 하였는가?
- 법규파악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재검토하였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상태를 최소한 반기 1회 점검하는 절차는 마련되었는가?
-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하는 프로세스는 구축되었는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대상자는 누구일까?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처벌대상자 등에 대한 이해

법제1조는 목적이다. 요지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다, 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에서 자문(自問)한 내용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요지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 개념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히,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별표1]에 해당하는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1] 요약

1.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드, 일산화탄소의 급성중독	13. 다음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가. 직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14종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09종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14.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된 기도과민증후군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6. 톨루엔, 크실렌, 노말렉산 등 유기화합물의 급성중독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노출 독성간염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급성중독	17. 보건으로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C형 간염 매독 등
8. 황화수소에 노출된 급성중독	18. 습한 상태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중독	19. 동물/사체, 짐승털/가죽, 낚마, 고물 발생 탄저/브루셀라증
10. 불화수소, 불산에 노출된 급성중독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11. 인(백린, 황린)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중독	21. 고기압/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장애, 잠수병 등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 질병	22.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종사자란 근로자와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과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업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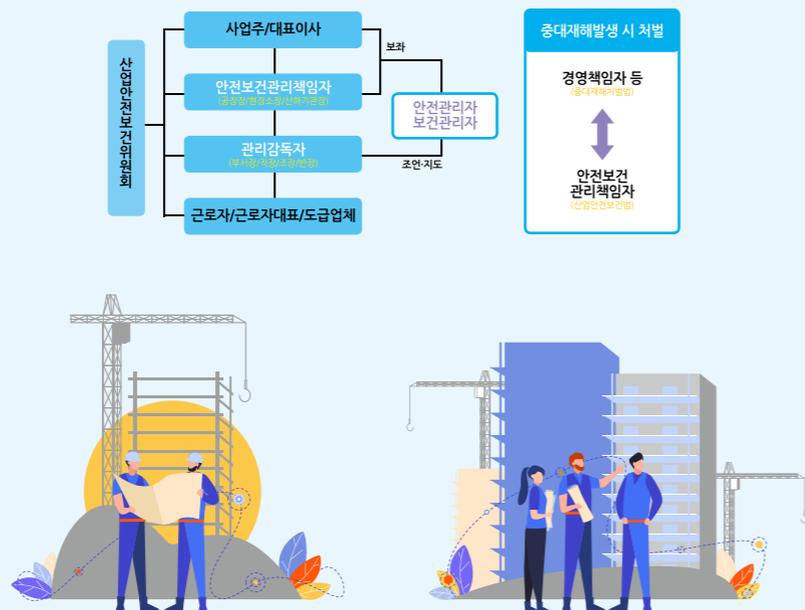
예를 들면 기업에서 안전보건담당 임원이 있을 경우에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처벌

을 면할 수 있느냐가 궁금할 것이다. 결론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조직, 시설)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 어느 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경우 또는 건설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에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에, 공장장과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어느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개의 법이 적용된다면 처벌대상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예방을 위한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법률이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자는 서울 본사에 있는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현장소장)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책임 관련



3.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목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등)과 시민(이용자 등)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구체적이며 명시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기준 유무)	안전의무 범위 (의무 사항)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제공·지정하는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	도급사업 책임범위 (범위 확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처벌 대상 (중점 적용)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사망사고 : 1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처벌기준 (의무 위반)	* 사망사고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사고 : 10억원 이하의 벌금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 책임

<참고사항>

화학회사(공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슴기 살균제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회적 참사도 처벌 대상이므로 화학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범위를 정할 때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해당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주나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의무사항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1호와 제4호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의 관련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그 내용용은 아래와 같다.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9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 등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위험성평가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할 것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⑧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는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또한,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4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받을 것

②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받을 것

④ 제3호에 따른 점검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제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도급, 용역,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주안점

따라서 기업(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자체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법제2조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한 준비〉

첫째,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할 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

☞ 이것은 현장점검과 공정 또는 기계·설비의 운전조건과 위험특성, 위험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중점 관리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취급이나 작업환경 또는 작업이 있느냐 확인하는 것 ;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

☞ 이것은 작업부서 또는 장소별로 해당하는 화학물질 명, 사용량, 작업특성과 작업시기 등을 목록화(List up)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조직에서 직업성 질병자와 연관된 관리대상 위험요인과 작업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화학회사는 특정 화학물질의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법제4조 및 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이 조항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은 대부분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을 받고 있다. 또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주과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PSM 제도에서 실행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다만, 적용법규의 준수평가 주기 등과 같이 기준이 일부 다르고 표현방법이 다르다.

구체적인 준비 또는 확인 단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의무사항별로 우리 공장(사업장)의 준수상태를 자체 점검하는 것.

- ☞ 9개 항목별로 비교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점검 비교조사표 양식의 예시>

시행령의 의무사항	현재의 운영실태 및 관련 절차서/규정	미비사항의 보완계획

둘째,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첫째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셋째, 법제4조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 ☞ 아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발생이 보고되고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실행 및 관리하고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만약 미흡하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제4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 ☞ 이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시청 등에서 감독권한과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업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다섯 번째, 위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구해서 참조하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현재 공장(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령도 많고 문서화된 절차서/규정도 엄청나게 많은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서를 추가로 만들지 말고 현재 구축된 문서체계의 유사한 기준 절차서/규정을 통합하고 보완·개정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실한 실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증 근거자료를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경영책임자의 리더십과 책임관리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준비단계를 요약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우리 조직(사업장) 체계에 맞도록 구축하고 이행이 충실하게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우리 회사(조직)의 책임경영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이분을 정점으로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유사한 문서 절차서는 개정하고 통합해서 문서 종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에서 적용받는 내용을 파악하고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화학공장의 정비작업 등과 같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업무가 있다면, 이 또한 관리범위에 포함해야 하고 철저히 책임관리 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자료>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안)
- * 법무법인(유) 율촌 :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방안”, “경정토론” 발표자료
- * K&C Webinary 배포용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 박영사/송인택 등 공저
- * 안전보건관리시스템_ 교문사/정진우 지음
- *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산업보건지 2021년 02월호”
- *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 관련 자료 등
- 좋은 자료를 활용에 감사드립니다 -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개편 발표하였다.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단계 변경으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을 요약 정리하였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사항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는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함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 회의 시 영상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 발열(37.5℃ 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100인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모임 가능 • 대규모(100~499인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가능 • 500인 이상은 원칙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가능(장소별, 목적별 행사 수칙 통합) • 접종완료자만 취식금지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기준 제한인원 기준 해제 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상향하며 해제 검토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예외사항 : ① PCR 음성 확인자, ② 18세 이하, ③ 불가피한 미접종 등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 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주체는 집회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임
-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 2차 개편 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관련 행사*”도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의원회, 방송제작 및 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 ▲ 100인 미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실시 가능, ▲ 100인~499인 : 접종자만으로 구성하여 실시, ▲ 500인 이상 : 원칙적 금지
- 다만, 안전보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m²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 3차 개편 시 인원 제한 해제 예정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구성 가능) •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및 모임제한 해제

*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② 임종 등

출장

○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인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외부 방문자는 출입 명부 작성 및 유지(QR코드, 안심콜 등)

조치사항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C 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조치사항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 책상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조치사항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환기는 1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조치사항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 자제
-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 시 이행 사항>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매일소독, 운행 전·후 환기 • 마스크 착용(탑승·운행자 전원) • 음식물 섭취금지(물, 무알콜 허용) • 탑승자 기록(정원초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시 변경사항 적용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외부인 출입금지,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방문자 출입명부, QR코드 및 안심콜을 이용한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손씻기·손소독, 공용공간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조치사항

- 가급적 1인 1실 사용,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신규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 시설면적 8㎡당 1명		• 추후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예정

[주요사항]

- ①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10일 이내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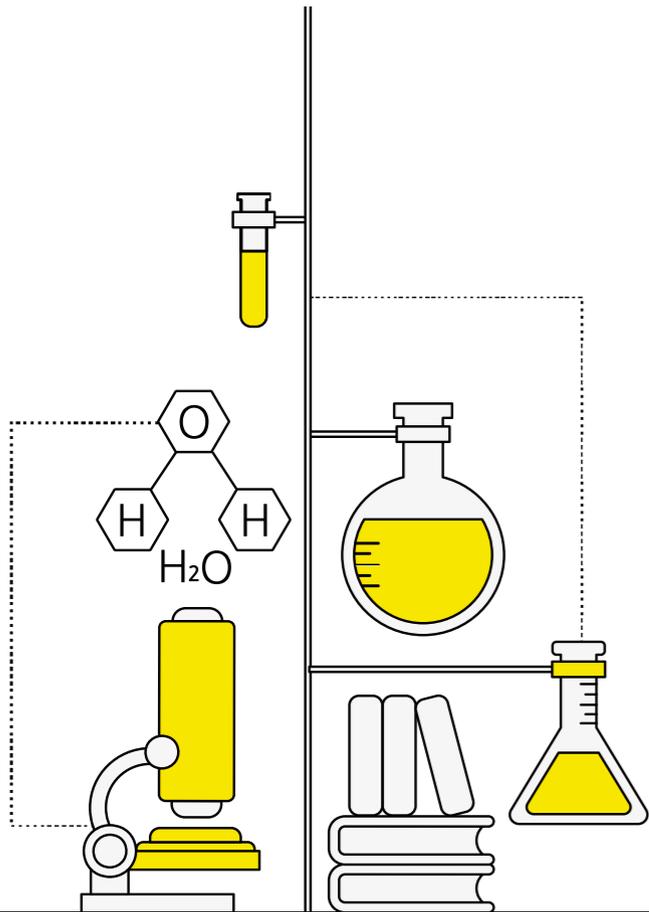
2021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온라인 개최 결과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이하 열즐화)’은 초등학교(3~6학년)를 대상으로 화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화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21,000여 명의 초등학교생이 참가하였고, 지역 교사단체 및 회원사 봉사자가 함께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화학 원리를 알려주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와 언택트를 반영하여 온라인 행사로 개편하였다. 지역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화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며 화학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1 열즐화는 어린이 화학기자단 300여 명을 선발하여 어린이 기자단이 직접 화학기사를 작성하고 토론하며 미디어콘텐츠(기사, 만화) 연재, 화학 강연을 활용하며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www.chemworld.kr)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100일간 어린이 화학기자단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며 포인트를 많이 쌓은 어린이 5명을 선발하여 각종 시상품을 전달하고, LG화학, 코오롱인더스트의 온라인 인턴 참여 혜택을 제공하였다. 🌱



어린이 화학기자단 100일 활동 요약

1) 온라인 강연으로 화학 배우기



<온라인 화학 특강 1탄>

- 세상을 구하는 착한 화학
 - 생명을 살리는 종이 한 장의 화학
 - 서강대학교 화학과 신관우 교수
- 동아시아인스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 2021년 5월 13일(목) 오후 7시~8시
 - 동시 시청자 최대 212명, 조회수 2,017회



<온라인 화학 특강 2탄>

- 엉뚱발랄 화학 실험 쇼!
 - 섭섭박사와 과학기자의 실험 배틀
 - 화학기자단 발송 화학 키트 사용법 안내
- 동아시아인스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7시~8시
 - 동시 시청자 최대 301명, 조회수 2,734회



<온라인 화학 특강 3탄>

- 세상을 구하는 착한 화학
 - 이산화탄소의 끝없는 가치를 찾아서!
 - 온실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서울대학교 생체분자나노재료 연구실, 이규민 연구원
- 동아시아인스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 2021년 8월 31일(화) 오후 7시~8시
 - 동시 시청자 최대 182명, 조회수 1,703회

2) 어린이과학동아에서 화학 배우기

만화로 화학 배우기



닥터 척의 화학 코믹 어드벤처 : 4화

<만화로 화학 배우기>

- 닥터 척의 화학 코믹 어드벤처
 -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만화로 화학 배우기
 - 어린이과학동아 만화 연재 6회(4월~9월, 4p)
 - 온라인 홈페이지 동시 공개



<기사로 온라인 강연 다시 보기>

- 어린이과학동아 6월 1일자 12호 P.72~75(4p)
 - 세상을 구하는 착한 화학 1탄 강연 리뷰 기사



3) 화학 실험 참여하기



<화학 실험 키트 발송>

- 화학기자단 300명 전원 화학 실험 키트 발송 (6/30)
- 영풍 발랄 화학 실험쇼(6/17)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험 아이템과 안전 사항을 안내
- 발송 키트 구성품
 - ① 닥터척을 구해라(양초 펌프 실험)
 - ② 케미미의 목소리를 찾아줘(전해질 실험)
 - ③ 풀이를 탈출시켜라(화학 거품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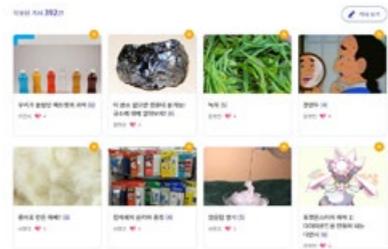
<화학 실험 따라하기>

- 안전하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실험 영상 제작 (매월 1일, 15일 총 6회 공개)
- ① 빵! 터지는 실험
- ② 당근이 부글부글
- ③ 달고나가 달구나
- ④ 린스로 눈을?
- ⑤ 콜라가 투명해진다고?
- ⑥ 꼬질꼬질 동전 깨끗하게 닦기



• 영상 총 누적 조회수 : 4,782회

4) 화학 기사 작성하기



<화학 기사 작성>

- 화학기자단 어린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현지 기자가 첨삭 피드백을 제공
- 작성 기사 누적 1,212건
노출 기사 누적 764건
(첨삭 대기, 내용 불충분 보류 약 350건)

금주의 우수기사



<젤리는 액체일까 고체일까?>
박지유 기자

우수기사 8호

<우수 기사 선정>

- 1호-인공음식 과연 필요할까?
- 2호-광선검이 현실세계로 왔다고?
- 3호-방사능은 무엇인가?
- 4호-친환경 전기차를 만나다
- 5호-화려한 아이스볼 만들기
- 6호-반도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7호-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없애주는 방법
- 8호-젤리는 액체일까 고체일까?
- 9호-세상에서 가장 정확해! 원자시계
- 10호-우리가 몰랐던 페트병의 과학
- 11호-산소채집실험
- 12호-원소기네스북
- 13호-플라스틱 제로 도전기!

5) 화학 토론하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7/27~8/11)

찬성 71% 반대 29%

<화학 토론 참여하기>

- 화학 이슈에 관한 견해를 논하는 토론티
- 토론 주제 제안 6회(6월~9월/격주 목요일)
 - ① 인공 화학 물질 사용 [찬성60%, 반대40%]
 - ② 전 성분 표시제 [찬성69%, 반대31%]
 - ③ 탄소세 시행 [찬성56%, 반대44%]
 - ④ 플라스틱 사용 [찬성71%, 반대29%]
 - ⑤ 화학연료 사용 [찬성24%, 반대76%]
 - ⑥ 화학 발전의 필요성 [찬성83%, 반대17%]

6) 화학 커뮤니티 수다방(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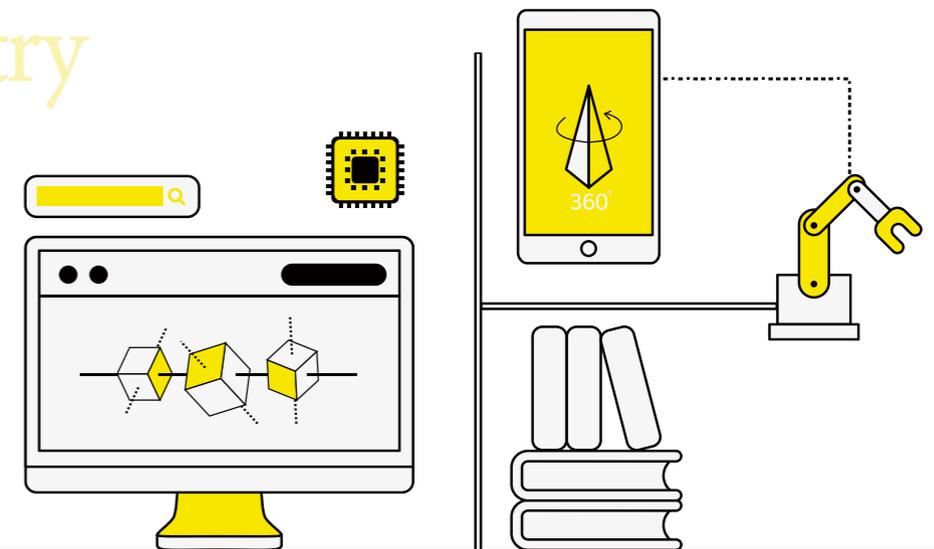


화학기자단 여러분 사랑해용

<화학기자단 커뮤니티>

- 어린이 기자단들의 건전한 화학 소통 창구 포스팅 수 약 3,300개
- 화학 책 소개
- 화학관련 정보 공유
- 실험 따라하기 비하인드 공유 등
- 화학 소셜쓰기
- 원소 활용 캐릭터 그림

Chemistry



2021년 안전세미나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21년 12월 2일(목)에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학산업 안전문화 향상 세미나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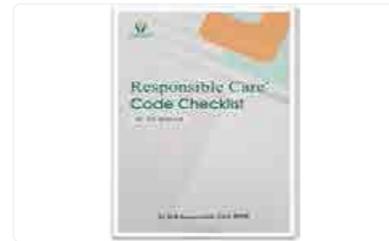
2021년 RCLG 하반기 회의 참가

2021년 하반기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 RC 리더십 그룹 회의를 9월 16일(목)~17일(금)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30여 개 회원국 담당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RC자체평가 툴 개발, ICCA 멘토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 RC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2021년 제1회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21년 12월 7일(화)에 '2021년도 제1회 실행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체크리스트 보안코드 내용 검토, ②2021년도 RCLG 회의 결과 등 2개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21년 12월 21(화)에 '2021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①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②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및 ③임원 개선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2021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온라인 개최

2021 열려화는 어린이 화학기자단 300여 명을 선발하여 어린이 스스로 화학 기사를 작성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기사, 만화, 화학 강연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www.chemworld.kr)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100일간 어린이 화학기자단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며 포인트를 많이 쌓은 우수기자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고 LG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2개사의 온라인 일일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수 기자단으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화학을 직접 탐구하며 화학기업의 역할을 배우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애경케미칼

“2030년 4조원 매출 달성”
중장기 목표 설정

1

오는 11월 애경그룹 화학사들을 뭉쳐 새롭게 출범하는 ‘애경케미칼(가칭)’이 오는 2030년까지 4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그룹 주력 화학사 애경유화가 에이케이캠텍, 애경화학을 흡수하는 형태로, 존속법인인 애경유화는 11월 1일부로 ‘애경케미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병 법인은 연매출 약 1조7,000억 원 규모를 갖추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함과 동시에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케미칼

M&A로 확보한
800여 개 특허 활용해
핵심 소재 국산화

2

DL그룹(옛 대림그룹)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신성장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석유화학사로 도약 중인 계열사 DL케미칼이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유력 기업을 사들이면서 퀀텀 점프에 나섰다. DL케미칼은 이번 M&A로 전통적인 석유화학사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1위 스타이렌블록코폴리머(SBC) 제조사이자 바이오 케미칼 기업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됐다. DL케미칼이 주목한 것은 8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크레이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크레이튼이 생산하는 SBC는 합성고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 DL케미칼은 이번 인수로 확보한 특허를 활용해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설 예정이다. 아시아로 시장 외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

울산 NB라텍스 증설
2,560억원 투자

3

금호석유화학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2,560억원을 투자해 연산 24만톤 규모의 NB라텍스 설비를 확장한다. 2023년 말 증설이 완료되면 NB라텍스 생산능력은 기존 71만톤에서 95만톤까지 확대된다. 수요 상황에 따라 추가 증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과 울산시는 성공적인 NB라텍스 증설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해당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NB라텍스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세계적으로 위생의식이 고취되면서 의료용 장갑 수요가 증가 추세다. 이에 발맞춰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에쓰오일

청정수소 프로젝트 참여...
아람코와 블루 암모니아
국내 공급

4

에쓰오일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선도한다.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경쟁력 있는 블루 암모니아를 국내에 공급하는 등 해외 청정 암모니아 생산원의 확보, 도입 및 수소 추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에쓰오일은 최근 열린 정부의 ‘수소 선도 국가 비전’ 발표에서 청정수소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남부발전 등이 함께 참여한다. 에쓰오일은 자체적으로도 대규모 수소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장 연료를 수소 연료로 전환하고, 증질유 분해·탈황 등의 생산공정에 청정수소를 투입할 계획이다.



LG화학

신규 EP 소재로 태양광
패널 프레임 시장 공략

5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 프레임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10월 19일 LG화학은 독자 기술 및 제조 공법을 활용해 열팽창 수준이 낮아 온도 변화에도 물질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PC/ASA

난연 소재인 'LUPOY EU5201'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번에 개발한 'LUPOY EU5201'은 폴리카보네이트 컴파운드에 유리섬유를 첨가해 일반 플라스틱의 기계적 물성을 보완한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다. LG화학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탄소중립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번 LUPOY EU5201 제품 개발을 기반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

폐비닐 넣고 400도서
4시간... 원유가 콤팩

6

SK이노베이션은 '도시 유전'에서 만들어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실제 정유 공정에 지난달 시범 투입했다. 폐비닐에서 나온 기름을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하는 데 성공했다. 연내 200톤 규모를 시작으로 점차 투입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외에선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등이 소량을 자사 공정에 투입한 바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최근 '지구를 중심에 둔 친환경 혁신'이라는 의미로 사명을 바꾸며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해 울산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단지를 짓는 등 친환경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연간 90만톤 플라스틱 재활용을 달성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이 국내에서 연간 생산하는 플라스틱 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롯데케미칼

'글로벌 수소 펀드'
1,400억원 투자

7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수소 산업 가속화에 대비한 기술 선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펀드(Clean H2 Infrastructure Fund)에 1억 유로(1,400억원)를 투자한다.

이 펀드는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발족한 수소 경제 관련 글로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동 의장사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와 회원사인 토탈(Total) 공동 주도로 결성한 수소 투자 펀드다.

2조원(15억유로) 규모로 전 세계의 수소 저장-유통-인프라 및 수소 차량 활용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아시아 화학회사 중 유일하게 설립 초기부터 8개사와 함께 참여한다.



OCI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3분기 영업이익
10배 증가

8

OCI가 3분기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의 상승과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매각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0배 넘게 증가했다. OCI는 올해 3분기 1,9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181억원)보

다 976.9%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액은 8,8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9%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776억원으로 2,829.7% 증가했다. OCI 측은 "원재료 가격 인상과 해상물류 이슈로 인한 선적 연기 및 운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판매가격 상승과 도시개발(DCRE) 사업의 분양 매출, 미국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매각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음극재용 고연화점 피치 사업에 대해선 "상업 생산은 2023년 말 정도가 될 것 같다"며, "생산을 시작하고 나서도 배터리 업체와 상당 기간 테스트를 해야 하기에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는 건 2024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22

한국RC협회의 상반기 주요 일정

KRCC's major events of 2022



일반회원

- | | |
|-----------------|---------------|
| 금호석유화학(주) | (주)LG화학 |
| 금호피앤비화학(주) | LXMMMA(주) |
| DIG에어가스(주) | 여천NCC(주) |
| 대한유화(주) | OCI(주) |
| 동서석유화학(주) | 용산화학(주) |
| 동우화인켐(주) | 이수화학(주) |
| 듀폰코리아(주) |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 |
| DL케미칼 | 인피니움코리아 |
| 량세스코리아(유) | GS칼텍스(주) |
| 롯데엠시시(주) | KPX케미칼(주) |
| 롯데이네오스화학(주) | 코베스트로코리아(주) |
| 롯데정밀화학(주)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 롯데케미칼(주) | 태광산업(주) |
| 머크(주) | 폴리미래(주) |
| 삼남석유화학(주) | 한국바스프(주) |
| (주)아케마 | 한국알콜산업(주) |
| 애경케미칼(주) | 한국ASK케미칼(주) |
| (주)에브닉코리아 | 한국이네오스티롤루션(주) |
| (주)SH에너지화학 | 한국트린지오(유) |
| SK머티리얼(주) | (주)한수 |
| SKC(주) | 한화솔루션(주) |
| SK지오센트릭(주) | 한화토탈(주) |
| 에어리퀴드코리아(주) | 효성화학(주) |
| 엑셀타코팅시스템즈코리아(유) | |

준회원

- 대한석유협회
- 한국비료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2 제1회 이사회 및 제23기 정기총회(안)
 일정 2022년 2월 중
 장소 미정

2022 상반기 RCLG (RC Leadership Group) 회의
 일정(안) 2022년 3월 중
 장소(안) 컨퍼런스홀 형식 개최

2022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개최
 목적 화학산업 홍보 촉진
 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내용 어린이 화학기자단 운영 및 미디어콘텐츠 (웹툰, 기사, 강연) 제작 등



RESERVATION



CONTACT

한국RC협회의 사무국
02.3668.6173



회원사 가입안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국RC협회의
회원사 가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